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179
----------	-------

발의연월일 : 2025. 8. 14.

발 의 자 : 신장식 · 김선민 · 이해민
박은정 · 김준형 · 서왕진
강경숙 · 황운하 · 차규근
김재원 · 백선희 · 정춘생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 훈장(勳章) 및 포장(褒章)은 대한민국 국민이나 우방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에 뚜렷한 공적(功績)을 세운 사람에게 공적 내용, 공적이 국가와 사회에 미친 효과의 정도, 그 밖의 사항을 고려하여 수여함. 그 중에 건국훈장은 대한민국의 건국에 공로가 뚜렷하거나, 국가의 기초를 공고히 하는 데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함.

이에 따라 독립유공자에 대하여 건국훈장이 수여되고 있는데, 건국훈장은 독립유공자 외에도 전직대통령이나 외국원수 등에게도 수여되고 있음을 고려하면 독립운동의 공적을 기리기 위한 훈장이 따로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

거하는 등 우리 민족의 독립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독립훈장을 수여할 수 있도록 별도의 규정을 신설하고,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에서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것으로 결정한 경우에는 서훈을 취소하도록 함(안 제11조의2 신설 등).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서훈 대상자의 공적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실지조사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독립훈장을 받은 사람은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에서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것으로 결정한 경우

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서훈의 취소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대통령령에 따라 서훈을 복원하고 훈장 또는 포장과 이와 관련하여 환수한 물건 및 금전을 반환한다.

제9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독립훈장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독립훈장) 독립훈장은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하는 등 우리 민족의 독립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하며, 이를 5등급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훈의 취소 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중 “건국포장”을 “독립훈장(獨立勳章)·건국포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건국포장”을 “독립훈장·건국포장”으로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서훈의 추천) ① · ② (생략)	제5조(서훈의 추천)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서훈의 추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적심사를 거쳐야 한다. <후단 신설>	③ ----- ----- ----- <u>. 이 경우 서훈 대상자의 공적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실지조사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u>
제8조(서훈의 취소 등) ①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그 서훈을 취소하고, 훈장 또는 포장과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물건 및 금전을 환수한다. <단서 신설>	제8조(서훈의 취소 등) ① ----- ----- ----- ----- ----- ----- ---- <u>. 다만, 독립훈장을 받은 사람은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u>
1. ~ 3. (생략) <신설>	1. ~ 3. (현행과 같음) 4. 「 <u>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u> 」에 따라 <u>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에서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것으로 결정한 경우</u>

② . ③ (생 략) <u><신 설></u> 제9조(훈장의 종류) 훈장의 종류 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2. (생 략) <u><신 설></u> 3. ~ 12. (생 략) <u><신 설></u>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서훈의 취소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대 통령령에 따라 서훈을 복원하 고 훈장 또는 포장과 이와 관 련하여 환수한 물건 및 금전을 반환한다. 제9조(훈장의 종류) ----- -----. 1. · 2. (현행과 같음) 2의2. 독립훈장 3. ~ 12. (현행과 같음) 제11조의2(독립훈장) 독립훈장은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 거하는 등 우리 민족의 독립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 에게 수여하며, 이를 5등급으로 한다.
--	--